

##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July 1,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내용
I. 보도자료	
<a href="#"><u>제조업분야 산재 관련 비용 부당전가행위 직권조사 실시</u></a>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제조업분야 산재 관련 비용 부당전가행위 직권조사</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지난 5월 건설업 분야에 이어 6. 7. 부터 제조업분야의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실시</li></ul>
<a href="#"><u>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u></a>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li><li>•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해외 경쟁정책 동향 파악,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방법에 관한 경험 등을 공유</li></ul>
<a href="#"><u>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u></a> 6. 7.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슈) ICT전담팀 조직 개편</li><li>• (주요내용)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li></ul>

이슈	주요내용
<p><b><u>'IT 서비스도 일감개방...공정위 또 대기업 규제' 기사 관련 반박</u></b> 6.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대기업규제 관련 공정위 반박</li> <li>• (주요내용) 공정위가 추진중인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제정되면 기업들이 물류업, 급식업의 일감 개방 의무화 때처럼 결국은 SI(시스템통합) 사업 일부를 외부 업체에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사업자 스스로 준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규범 성격을 지닌다고 해명</li> </ul>
<p><b><u>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u></b> 6.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6. 10. 부터 시행</li> </ul>
<p><b><u>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 고시 개정 시행</u></b> 6.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고 6. 10. 부터 시행</li> </ul>
<p><b><u>'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조사·심판 1인2역 권한 막강한데...공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사 관련 설명</u></b> 6.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행정소송 패소율, 과징금 환급액, 중립성 관련 기사에 대한 공정위 반박</li> <li>• (주요내용)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조사·심판 1인2역 권한 막강한데...공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i) 공정위 시정 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전부·일부승소)의 판결 비율은 90% 이상이고, (ii) 공정위 패소사건의 경우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부과하고 있으며, (iii)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 기능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li> </ul>
<p><b><u>2021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공개</u></b> 6.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2021년 지주회사 현황</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li> </ul>
<p><b><u>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u></b> 6.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 운영</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고객유인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6.16.~7.31. 기간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부당 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li> </ul>

이슈	주요내용
<p><b><u>'헛스윙 늘어난 공정위...4년간 조사 중 무혐의 절반 육박' 기사 관련 설명</u></b> 6. 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공정위 조사 통계 관련 기사에 대한 공정위 해명</li> <li>• (주요내용) '헛스윙 늘어난 공정위...4년간 조사 중 무혐의 절반육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i) 2017~2020년까지 공정위 직권조사 사건수는 직전 4년보다 감소하였는데, 동기간 처리 사건 중 무혐의 비율은 11.5%이며, (ii) 2020년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 중 행정소송이 제기된 비율은 40%로 이전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고, (iii)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취지의 판결 비율은 90% 이상이라고 해명</li> </ul>
<p><b><u>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공정위-서울대 업무협약 체결</u></b> 6. 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공정위-서울대 업무협약 체결</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서울대학교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li> </ul>
<p><b><u>이정희 중앙대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u></b> 6. 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공정위 비상임위원 임명</li> <li>• (주요내용)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연임</li> </ul>
<p><b><u>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 24'로 개편</u></b> 6.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소비자포털 개편</li> <li>• (주요내용)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포털이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에서 '소비자24'로 개편됨</li> </ul>
<p><b><u>전경련 대기업차별규제 기사 관련 설명</u></b> 6.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대기업차별규제 관련 기사에 대한 공정위 해명</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전경련, "기업성장 저해하는 대기업차별규제, 48개 법령에 275개"'라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일반지주의 CVC허용 등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해명</li> </ul>
<p><b><u>해운업계, 공정위서 최대 2조 과징금 부과 기사 관련 설명</u></b> 6.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해운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기사에 대한 공정위 해명</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컨테이너 해운선사들의 운임담합 사건과 관련하여 최종적인 범위만 여부 및 제재 수준에 대하여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li> </ul>
<p><b><u>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공개</u></b> 6.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 원을 지급</li> </ul>

이슈	주요내용
<p><b>외식 업종 6개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b> 6. 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외식 업종 가맹본부 자율규약 체결식 개최</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하였고, 이에 외식 업종 6개 가맹본부가 자율규약을 정식으로 체결. 해당 자율규약에는 (i)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ii)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iii)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등의 거래 기준이 포함</li> </ul>
<p><b>‘방통위 vs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힘겨루기.. 밀릴 순 없다’ 기사 관련 반박</b> 6. 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법안 관련 기사에 대한 공정위 반박</li> <li>• (주요내용)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법안’과 다른 법안들 간의 중복 문제가 해소되어 합의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li> </ul>
<h2>II. 주요 소식</h2>	
<p>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 기금법 입법공청회 6.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입법공청회 개최</li> <li>• (주요내용)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 공청회 개최</li> </ul>
<p>글로벌 앱공정성 관련 국제 컨퍼런스 6.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정책</li> <li>• (주요내용) 국회 과방위원장과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동주최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 방향’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 개최</li> </ul>
<p>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추세 6. 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추세</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3대 아웃렛 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 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일부 편의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업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li> </ul>
<p>공정위, ‘단체 급식 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주 6.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단체 급식 시장 관련 연구용역 발주</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 때문에 해당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단체 급식 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li> </ul>
<p>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6.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세미나 개최</li> <li>• (주요내용)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세미나에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개정안 제25조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li> </ul>

이슈	주요내용
<p>202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공개 6.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2020년도 공정위 통계연보 공개</li> <li>• <b>(주요내용)</b> 공정위는 '2020년도 공정위 통계연보'를 공개</li> </ul>
<p>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 6. 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li> <li>• <b>(주요내용)</b> 공정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C2C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수집 범위를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으로 제한하되, 중고거래앱등을 실행할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긴 팝업창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li> </ul>
<p>공정위, 최소보증임대료 계약방식을 적법하다고 판단 6. 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최소보증임대료 방식의 임대차계약 약관</li> <li>• <b>(주요내용)</b> 공정위는 최소보증임대료 방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li> </ul>
<p>대기업 현장조사 증가 추세 6. 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대기업 현장조사 증가 추세</li> <li>• <b>(주요내용)</b> 종전에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사건 진행에 차질이 있었으나, 최근 공정위는 대기업 현장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li> </ul>
<p>공정위, 기업집단 내부거래 행태 분석 추진 6.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대규모기업집단 규제</li> <li>• <b>(주요내용)</b>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시정 후 거래구조 변경사항 및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보고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li> </ul>
<p>렌터카 수리비·위약금 피해 3년간 급증 6.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렌터카 수리비·위약금 피해 급증</li> <li>• <b>(주요내용)</b>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비자원은 공정위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방침</li> </ul>
<p>공정위, 물류 일감개방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표 예정 6. 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물류 일감개방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li> <li>• <b>(주요내용)</b> 공정위와 국토부는 7월 초에 물류 일감개방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표할 계획</li> </ul>

이슈	주요내용
<p>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6. 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세미나 개최</li> <li>• <b>(주요내용)</b> 공정위는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내 역외적용 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개정안 제24조, 제25조) 등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힘</li> </ul>
<p><b>III. 국회 발의법안</b></p>	
<p><b>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김병욱 의원안) 국회제출</b> 6.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발의</li> <li>• <b>(주요내용)</b> 국회 정무위 김병욱 의원 등 10인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김병욱 의원안)을 발의</li> </ul>
<p><b>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 (권명호 의원안) 국회제출</b> 6. 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li> <li>• <b>(주요내용)</b> 국회 산자위 권명호 의원이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li> </ul>
<p><b>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배진교 의원안) 국회제출</b> 6. 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슈)</b>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li> <li>• <b>(주요내용)</b> 국회 정무위 배진교 의원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li> </ul>

# 세종 공정거래 소식 (2021년 6월 2~4주차)

---

## I. 보도자료

### 1. 제조업분야 산재 관련 비용 부당전가행위 직권조사 실시 (6. 7.)

- 공정위는 지난 5월 건설업 분야에 이어 6. 7. 부터 제조업분야의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전가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조사 확대 실시
  - **(배경)**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났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도 높아졌음
  - **(조사 대상)**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 총 18개사를 선정
  - **(조사 내용)** (i)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ii)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
-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안전확보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임

### 2.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6. 7.)

- 공정위 대표단은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해외 경쟁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시장경쟁평가 방법론(관련 제도, 경험 등)에 관하여 논의

### 3.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6. 7.)

- 공정위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
  - 디지털 광고분과는 (i)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ii)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iii)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
  - 인앱결제 조사팀은 인앱결제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

#### 4. 'IT 서비스도 일감개방...공정위 또 대기업 규제' 기사 관련 반박 (6. 8.)

- 공정위가 추진중인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이 제정되면 기업들이 지난 2월 물류업, 4월 급식업의 일감개방 의무화 때처럼 결국은 SI(시스템통합) 사업 일부를 외부 업체에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는 물류·급식업에 이어 IT서비스까지 규제하는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공정위는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사업자 스스로 준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율규범 성격으로, 기업들이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며 일감개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

#### 5. 대규모유통업법 반품지침 개정 시행 (6. 9.)

- 공정위는 (i)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위법성 판단의 중요 기준인 '반품조건'의 의미를 판례 및 심결례를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ii)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품지침에 반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 6. 10. 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반품조건에 대한 일반적 정의 규정 신설

- 반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반품조건'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

##### • 직매입거래 계약체결 시 약정하여야 할 '반품조건' 구체화

- 직매입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반품대상·기한·절차, 비용부담 등을 포함한 반품조건을 사전에 약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예시 추가

##### • 직매입에서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시즌상품'의 판단기준 보완

- 직매입거래는 판매기간이 짧고 수요예측이 어려운 시즌상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데, 시즌상품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월별·분기별 판매량, 재고량뿐만 아니라 매입량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해당 상품의 판매결과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입 의도와 목적도 함께 고려하도록 함

\*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정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 • 반품에 관한 서면약정 시 전자서명으로도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 공인인증서 및 그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한 전자서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명자의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으로 서면약정의 서명이 가능함을 명시



## 6.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 시행 (6. 9.)

- 공정위는 (i)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 보장, (ii)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iii)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적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하여 6. 10. 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 보장 (제9조, 제12조)

- **(개정 배경)**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감면신청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지위를 자동적으로 승계함.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1순위 지위를 승계한 2순위 자진신고자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만약 2순위 자진신고자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예컨대, 2순위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경우) 자진신고자는 1순위 및 2순위 감면을 모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
- **(개정 내용)** 1순위 지위를 승계한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순위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 •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제7조, 제13조, 제17조)

- 공정위는 2005년부터 어떤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을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운영하고 있음.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함
  - **신청 시기:**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기존에 감면신청한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함
  - **추가감면 액수:** 당해 담합 및 다른 담합의 규모비교를 통해 추가감면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 규모의 판단기준을 담합 가담자의 관련매출액의 합으로 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들러리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함
  - **신청절차:**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 •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적 개선 (제8조)

- 단독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 만 가능하도록 함
- 당초 신고된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하여, 별개의 담합에 대한 자료제출은 보정이 아닌 별개의 자진신고로 보도록 함

#### • 시행시기 및 적용시점 (부칙)

- 6. 10. 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심의되는 자진신고 건부터 바로 적용
- 단, 공동 자진신고로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75일로 하는 내용은 사업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시행일 이후의 보정부터 적용

## 7. '공정위 헛다리 과징금 1조원', '조사·심판 1인2역 권한 막강한데...공정위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사 관련 설명 (6. 9.)

- 6월 8일자 언론보도에서 (i) 공정위 제재조치 4건 중 1건이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다고 하면서 총 380건 중 94건이 패소하여 패소율이 24.7%이고, (ii) 공정위가 2016~2020년 행정소송 패소 등에 따라 과징금 9,908억원을 환급했으며, (iii) 공정위를 한지붕 아래서 판·검사 1인2역을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도
- 위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i)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승소 비율(75.2%)은 국가 전체 행정소송의 전부승소 비율(55.5%, 2020년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공정위 승소 취지(전부·일부승소)의 판결은 353건으로 공정위의 승소율이 92.8%에 이르며, (ii) 공정위 패소사건의 경우 과징금을 전액 환급한 후 판결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재부과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위 보도에서 언급된 환급액에는 재부과된 과징금액 3,205억원이 제외되지 않아 환급액이 과다 계산되어 있고, (iii)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와 심판기능이 엄격히 분리되어, 독립적인 지위가 보장된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를 거쳐 중립적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

## 8. 2021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공개 (6. 10.)

- 공정위는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2020년 12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
  - **(지주회사)** 2020년 12월 기준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개)과 유사한 수준이며, 2017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요건이 5천억 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 지주회사는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되었는데,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자산총액 감소 및 제외 신청 등임
    -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76개(46.6%)로 전년(82개, 49.1%)보다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증가(43개→46개)
  - **(소속회사)** 소속회사 수는 2,0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수는 각각 5.5개, 6.2개, 0.7개로 전년(자 5.4개, 손자 5.9개, 증손 0.8개) 대비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
    -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감소(10.9개→10.3개)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증가(손자 19.8개→20.0개)함. 전환집단은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파악됨
    -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신규전환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향(상장 20%→30%, 비상장 40%→50%)되어 자회사·손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확장함에 따른 소유·지배 간 괴리 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재무 현황)**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 1,598억 원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35.3%
    -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55조 3,490억 원(평균 3,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조 4,000억 원(집단별 평균 1조 7,250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1. 12. 30. 부터 시행되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지므로 일반지주회사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한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 \* '전환집단'이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으로, 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

## 9.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6. 16.)

-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발행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
- 공정위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위와 같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관행 개선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6. 16~7. 31. 기간 건강기능식품 분야 부당고객유인 자진신고센터를 운영

## 10. '헛스윙 늘어난 공정위...4년간 조사 중 무혐의 절반 육박' 기사 관련 설명 (6. 18.)

- 6월 17일자 언론 보도에서 (i) 공정위가 2017~2020년 기간 직권조사한 사건은 전체의 49.3%로 직전 4년간 40.3%보다 9% 포인트 높고, (ii) 동기간 처리 사건 중 무혐의 비율은 45.1%로 직전 4년간 무혐의 비중보다 5.7% 포인트 높으며, (iii) 작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중이 71%(44건)에 이르고, (iv) 2017~2020년 기간 총 219건의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은 135건으로 이 중 공정위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사건은 30.4%(41건)을 차지한다고 보도
- 위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i) 실제 2017~2020년 기간 직권조사 사건수(5,800건)는 오히려 직전 4년(6,282건) 대비 약 8% 감소하였고, (ii) 보도된 동기간 무혐의 비율 45.1%에는 무혐의 외에 이의신청, 과징금 재산정, 과징금 납기연장, 심사불개시, 주의촉구, 심의절차 종료, 조사중지, 종결처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이 중 실제 조사를 한 결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사건 비율은 11.5%(1,405건)에 불과하며, (iii) 작년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비중은 40%로 그 이전 시기와 유사하고, (iv) 2017~2020년 기간 총 219건의 과징금 불복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난 것은 138건으로, 전부승소 97건과 일부승소 28건을 포함할 경우 90.6%(125건)가 공정위 승소취지 판결이라고 해명함

## 11.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공정위-서울대 업무협약 체결 (6. 18.)

- 공정위는 6월 18일 서울대학교와 '과학기술분야 지식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이번 업무협약은 공정위와 서울대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본 협약을 통해 서울대는 공정위와 (i) 공정거래정책 연구, (ii) 과학기술분야 정책 개발, (iii) 기술 자문, (iv) 직원교육 프로그램 개발, (v) 세미나 및 워크숍 공동 개최 등을 협력하기로 함

## 12. 이정희 중앙대 교수, 공정위 비상임위원 연임 (6. 21.)

- 공정위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정위 비상임위원(임기 3년)으로 연임되었다고 밝힘
- 이정희 비상임위원은 중소벤처 및 유통 분야 전문가로서 지난 3년 동안 해당 분야 공정위 심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향후 갑을문제 등 기업 간 거래에서의 지배력 남용과 관련한 사건에서 특히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짐

## 13.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 24'로 개편 (6. 22.)

- 공정위가 대표로 운영하는 소비자포털이 6월 22일부터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소비자 24'로 개편됨
- '소비자 24'는 95개 부처·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정부 운영 대표 소비자포털로 각종 상품·리콜정보, 비교정보,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등의 대국민서비스를 제공

#### 14. 전경련 대기업차별규제 기사 관련 설명 (6. 22.)

- 6월 22일자 언론 보도에서 (i)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는 총 70개로, 2019년 8월 이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등으로 36개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신설되었고, (ii)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기업차별규제 개수 증가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보도
- 위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i) 위 수치에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하도록 하는 규정, 일반지주의 CVC 허용과 같이 규제를 완화하면서 마련한 부작용 방지 규정 등 신설규제로 보기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관련 신설·강화 규제를 총 6개로 판단한 바 있으며, 현재 규제정보포탈에도 이 6개를 포함한 총 36개가 공정거래법령상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로 등록되어 있으며, (ii)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등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함께 이루어졌다고 해명함

#### 15. 해운업계, 공정위서 최대 2조 과징금 부과 기사 관련 설명 (6. 22.)

- 6월 22일자 언론보도에서 (i) 최근 공정위가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해운업계에 최대 5,60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기로 결정하였고, (ii) 한-중, 한-일 항로에 대해서도 부과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
- 위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i) 한-동남아 항로와 관련하여, 심사보고서 상 관련매출액, 과징금 부과기준을 등은 잠정적인 심사관의 조치의견이고, (ii) 한-중, 한-일 항로의 경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심사관 단계에서도 과징금 수준 등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해명

#### 16.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및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공개 (6. 23.)

- 공정위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 9,438만 원을 지급  
- 공정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유형은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15개 행위유형이며,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은 위반행위의 조치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등)과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을 반영하여 산정됨

#### 17. 공정위, 외식 업종 가맹본부 자율규약 승인 (6. 25.)

- 공정위는 사단법인 글로벌프랜차이즈협의회가 외식 가맹사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을 승인. 해당 자율규약에는 (i) 필수품목 지정 최소화, (ii)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 보장, (iii) 내부분쟁조정기구의 설치·운영, (iv) 직영점 운영 의무, (v)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과 충실한 이행, (vi)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가맹점주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모범적 거래 기준이 포함되어 있음

#### 18. ‘방통위 vs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힘겨루기.. 밀릴 순 없다’ 기사 관련 반박 (6. 25.)

- 6월 24일자 언론보도에서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다른 법안들 간의 중복 문제가 해소되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도
- 위 보도에 대하여, 공정위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될 입법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힘

## II. 주요 소식

### 1.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입법공청회 개최 (6. 8.)

- 국회 법사위 이수진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재단법인 경청은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 기금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
- 공청회에서는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이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함께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해외에서는 미국의 페어펀드 제도와 같이 과징금을 피해자에게 활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 등으로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피해기업 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짐

### 2. 글로벌 앱공정성 (인앱결제강제) 관련 국제 컨퍼런스 개최 (6. 8.)

- 2021. 6. 8. 국회 과방위원장 이원욱 의원,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동 주최로 글로벌 앱공정성 (인앱결제강제) 관련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
- 국회 과방위에 계류 중인 인앱결제강제 금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던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 세출위원장 레지나 콕(Regina Cobb)의원이 참석하여 입법 추진 배경과 필요성, 법안 통과가 실패한 경위에 대해 발표

### 3. 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추세 (6. 8.)

- 공정위는 6월 7일 국내 3대 아웃렛 업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8일에는 국내 유명 편의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업계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

### 4. 공정위 ‘단체 급식 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발주 (6. 10.)

- 공정위는 단체급식 시장에서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때 자본금·사업경력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납품실적·부채비율 등에 높은 배점을 매기는 등의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제도나 관행 때문에 해당시장 진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단체 급식 시장의 경쟁 제한적 규제제도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단체 급식 시장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착수
  - 공정위는 위 연구를 통해 국내외 단체급식 시장 현황 및 경쟁상황 등과 민간·공공분야의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절차, 단체급식 관련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체 급식 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한 입찰 참가 기준, 평가 기준, 관행 등 구체적 사례를 파악해 나아갈 방침(계약기간은 4개월로, 연내 마무리될 전망)
- 기업들은 이러한 공정위의 태도가 업계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연구 용역 발주로 기업측이 단체 급식 사업의 개방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

## 5.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6. 11.)

-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공정위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개정안 제25조 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와 책임 조항의 해석, 법적 성격 및 바람직한 규율 방향 등에 대해 토론
- 공정위에서는 전자거래과장이 참석하여, 개정안 제25조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할 계획임을 설명

## 6. 공정위, 2020년도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 공개 (6. 14.)

- 공정위가 ‘2020년도 공정위 통계연보’를 공개하였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사건접수·처리)** 2020년도 사건 접수는 2,141건, 사건 처리는 2,572건으로 전년도(사건 접수 2,977건, 사건 처리 3,063건)보다 감소. 공정위는 코로나에 따른 현장조사 중단 등의 영향이라고 해명
  - **(과징금 부과)** 2020년도 과징금 부과 금액은 총 3,803억원으로 전년도보다(1,273억원) 198.8% 증가
  - **(소송)** 2020년도에 공정위를 피고로 하여 제기되었거나 국가배상소송 중 공정위 소관인 사건은 105건으로 전년도(102건)보다 증가

## 7.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 (6. 14.)

-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에 대한 개보위의 권고에 따라 C2C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수집 범위를 이용자의 전화번호만으로 제한하되, 중고거래앱 등을 실행할 때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성 문구가 담긴 팝업창을 띄워 이용자들에게 분쟁이 발생해도 소비자로 보호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제29조는 중고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i) 개인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수집하고, (ii) 개인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수집한 개인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8. 공정위, 최소보장임대료 계약방식을 적법하다고 판단 (6. 16.)

- 지난 2019년 8월 상가임대차계약의 최소보장임대료 관련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심사 청구를 접수한 공정위는, 약 1년 반 간의 검토를 거쳐 해당 조항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입점업체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액으로 임대료를 내고, 이를 넘어서면 매출에 비례해 정률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의 계약 조항

- 공정위에 따르면 (i) 임차인이 매출 저조로 경영상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고, (ii) 매출액이 적은 경우에는 최소보장임대료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위험의 크기를 예상할 수 있고, (iii) 매출이 증가하여 정률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 임차인에 불리한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공정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짐
- 다만 공정위는 최소보장임대료 조항이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입점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상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힘



## 9. 대기업 현장조사 증가 추세 (6. 17.)

- 지난해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공정위는 대기업 현장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

## 10. 공정위, 기업집단 내부거래 행태 분석 추진 (6. 20.)

- 공정위가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등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시정 후 거래구조 변경사항 및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태 분석’ 보고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짐
  - 현재는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적발 시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는 데에 그쳤다면, 향후 시정 및 반복 여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i) 시정조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ii) 내부거래 현황 분석 및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가능성이 높은 업종 예측, (iii) 향후 직권조사에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11. 렌터카·수리비 위약금 피해 3년간 급증 (6. 22.)

-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 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고 2020년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원은 (i)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과도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ii)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과 달리 다수의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iii) 현행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수리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계약서 상 운전자 이외의 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고, 렌터카 업계에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 실제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 등을 권고할 예정

## 12. 공정위, 물류 일감개방 자율 가이드라인 제정 및 공표 예정 (6. 22.)

- 공정위는 IT 서비스, 급식업종에 이어 7월 초 물류 일감개방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공표할 계획.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대기업들이 독립·전문 물류기업과 직접거래를 확대하고, 경쟁입찰 등 객관적·합리적 절차에 따라 거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 한편, 정부는 강제력 없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식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물류시장 개방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음

### 13.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6. 25.)

-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6월 25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와 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해외 플랫폼에 대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적용 관련 규정,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규정(개정안 제24조, 제25조)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규율 방향 등에 대해 토론
- 공정위에서는 전자거래과장이 참석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피드백을 아래와 같이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할 계획임을 설명
  - **(역외적용 규정(개정안 제5조) 관련)** 국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타법제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국내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할 예정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금지 규정(개정안 제66조) 관련)** 개정안 제66조에 온라인플랫폼 운용·이용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25조 내지 제27조)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할 예정
  - **(거래당사자 고지의무(현행법 제20조 제1항) 관련)**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지 의무가 개정안에서는 삭제되어 있는데, 계약당사자확정 및 플랫폼의 역할과 관련된 기본적 의무로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
  - **(신원정보 미·허위제공 연대책임(개정안 제25조 제2항) 관련)** 플랫폼의 의무위반과 관련된 손해로 플랫폼의 배상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자기책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고, 플랫폼은 중개자로서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
  - **(중요업무 수행 연대책임(개정안 제25조 제4항) 관련)** 플랫폼 자기책임을 규정한 것인바 이에 맞게 및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수정을 검토할 예정



### III. 국회 발의법안

#### 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김병욱 의원안) 국회제출 (6. 10.)

- 6월 1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지난 3월 5일 공정위의 입법예고안과 김병욱 의원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 공정위안은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이고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김병욱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공정위안은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검색순위 주요결정 기준을 표시하며, 사용자 후기의 수집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며, 맞춤형 광고 제공 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가 맞춤형 광고와 일반광고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김병욱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위해방지 조치의무 관련:** 공정위안은 리콜명령 대상자의 리콜의무 이행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게는 직접 리콜관련 전자적 조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나, 김병욱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i) 공정위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중개를 하는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중개거래와 직매입 상품을 분리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김병욱안은 이에 더하여 자신이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함. 또한 (ii) 공정위안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연결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김병욱안은 해당 연결수단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한정하여 그 신원관련정보를 소비자의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소비자가 해당 연결수단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신원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소비자에게 그 신원관련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C2C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보호 관련:** (i) 공정위안은 C2C 분쟁 발생시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신원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김병욱안은 공정위안에서 확인·제공 대상인 신원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 성명 및 주소를 삭제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를 분쟁조정위원회, 법원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소비자에게는 개인판매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ii) 김병욱안은 개인 간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경우 특히 개인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에 청약확인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재화등을 제공하는 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
  - **서면실태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 관련:** 공정위안은 서면실태조사 및 분쟁발생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등에게 자료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김병욱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동의를결제도 관련:** 공정위안은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김병욱 의원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임시중지명령 관련:** 공정위안은 기존의 엄격한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법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 등)을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하였으나, 김병욱안은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을 현행대로 유지

- **신설 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위안은 법위반 사업자의 회사분할(합병)시에도 신설법인에게 분할(합병)일 이전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김병욱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등에 대한 교육 관련:** 공정위안은 공정위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교육·연수를 수행하고, 이를 교육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김병욱안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2.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권명호 의원안) 국회제출 (6. 23.)

- 지난 23일 국회 산자위 소속 권명호 의원은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안 제31조의2 제5항 신설등)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 3.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배진교 의원안) 국회제출 (6. 24.)

-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배진교 의원은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안 제20조의4 신설, 안 제40조 등)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